

제 255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3.10.)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0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8.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2. 2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2.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3.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의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그들의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재난 극복과 지역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지역예술인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 나)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그 예술 활동이 증명되는 사람
- 2) 지역예술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안 제6조제4항)

3)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9조)

가) 준용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조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나) 시행규칙 :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당연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 재기재로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분야 공연과 전시 등의 활동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재난극복 경비마련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창작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나. 관계 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 1.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비용추계서**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예술인”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u>“지역예술인”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u></p>
<p>제6조(지원사업 등) ①~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6조(지원사업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u>제8조(준용)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신청, 절차,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삭제></p>
<p><u>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제>▷(법제처 정비대상)</p>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지역예술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지원

나. 관련 조문

1) 안 제6조제4항

2)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한시적 경비로 1억 이상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지원액 \ 연도	2021년도
군비	120백만원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1년도)

가. 지원대상: 거창군 거주 예술활동증명 소지 지역예술인

나. 사업비: 120명 x 1백만원 = 120백만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정 상 준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8.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2. 2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2.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3.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정현]

가. 제안이유

-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자들에게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 재정지원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2013. 9. 25.)·시행하였으나,
-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가 완료(2016. 8.)되고,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16. 3. 30)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완화되는 등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2021년부터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정책 결정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중호]

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한센인 정착촌 “성산마을” 집단이주가 완료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위로지원금 지원대상이 완화되는 등 한센인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화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1. 3. 8.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2. 2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2.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3.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규섭]

㉠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 제안이유

- 국가사적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으로 역사문화교육 및 관광자원 활용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기 간 : 2021. 2. ~ 12.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45-1번지 일원

- 취득면적 : 60,614m²(8필지)
- 소요예산 : 433백만원(국 303.1, 도 64.95 군64.95)
- 내 용 : 토지·지장물 매입, 사적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사유지		60,614	28,815			
취득	토지	거창읍 상림리 산45-1	임	24,397	12,442	2021년	거열산성 토지 매입	신*철
		거창읍 가지리 산156-1	임	6,645	3,322			오*기
		거창읍 가지리 산157	임	1,785	910			신*수
		거창읍 가지리 산160-1	임	694	353			김*준
		거창읍 가지리 산160-2	임	15,967	7,983			김*자
		거창읍 가지리 산160-3	임	1,190	606			정*수
		거창읍 가지리 산164	임	614	300			양*언
		마리면 영승리 산87-3	임	9,322	2,899			김*우

※ 토지 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다. 추진경과

- 2020. 9. 24. :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 2020. 11. 12. :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신청
- 2021. 1. 4. :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확정

라. 향후계획

- 2021. 2. : 공유재산 심의
- 2021. 3. :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 2021. 3. : 감정평가
- 2021. 3.~ 7. : 보상계획 공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2021. 7.~1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마. 기대효과

- 사적의 안전한 보호 및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성 제고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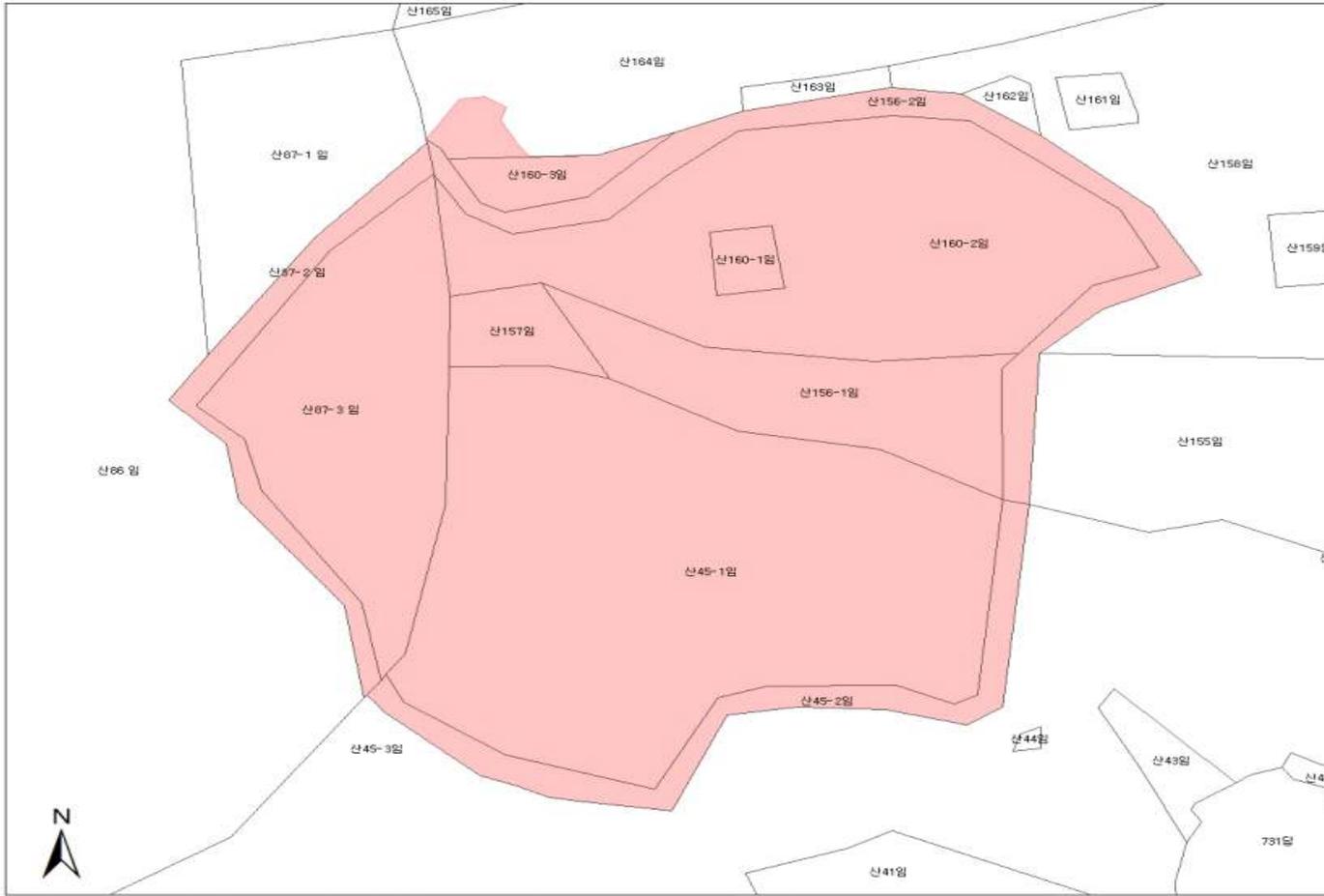
사진설명

위치도



사진설명

거열산성 전경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사진설명

지형도면

②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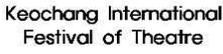
-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소송 관련 거창군과 집행위 간 최종 합의에 따른 상표권 매입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기 간 : 2021. 1. ~ 12.
- 양 도 인 :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 양 수 인 : 거창군
- 취득내용 :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등 4종
- 소요예산 : 1,000백만원(군1,000)
- 내 용 : 거창국제연극제 등록 상표권 이전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구 분	등록번호	상표 이미지	상표내용
2018.12.24. 계약상표권	41-0199273		KIFT 거창국제연극제
한글상표권	40-1527181		거창국제연극제
영문상표권	40-1499911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거창국제 OFF 연극제	41-0336964		거창국제OFF연극제 OFF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다. 추진경과

- 2018. 12. 24. : 상표권 이전 계약 체결
- 2019. 05. 27. : 집행위, 약정금 청구 소송
- 2020. 11. 13. : 약정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17.35억원 지급 등)
- 2020. 12. 04. : 상표권 매입 합의서 체결(합의금액 10억원),
소송취하
- 2021. 02. 02. : 상표권 이전 완료(집행위 → 거창군)

라. 향후계획

- 2021. 3. :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추진협의회 개최
- 2021. 3. ~ : 2021년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준비
(문화재단 인력 확보, 행사 계획 수립 등)
- 2021. 4. : 연극제 개최 관련 추경 예산 확보(인건비, 행사비)
- 2021. 7. : 거창국제연극제 정상 개최

마. 기대효과

-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 개최를 통한 제2의 도약
-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①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건은

가. 거창 거열산성은 1974년 도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었고,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인 복원정비와 보존 관리를 통해 2020년 9월 24일 국가문화재 사적 제559호로 지정되었음

나. 국가사적문화재로 삼국전쟁기 고대성곽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발굴·활용하기 위해 부지 취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②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의 건은

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은 2018년 거창군과 (사)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상표권 4종에 대한 이전 계약 체결과 약정금 청구소송, 상표권 매입 합의서 체결로 추진되었음.

나. 상표권 매입은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와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다. 상표권 매입 대금은 2021년 2월 2일자로 (사)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 지급되었고, 상표권 이전이 완료되는 등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나머지는
원안가결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재석위원 : 5명

○ 표결 : 수정안 찬성 4명, 수정안 반대(원안찬성) 1명, 기권수 없음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